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찬성자 10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2103호
- 다. 발의일자 : 2017. 09. 27
- 라. 회부일자 : 2017. 10. 12

2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 당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, 상위법인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2조는, 2017.07.27일 상위법인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어 기존의 국민안전처가 분리되어 독립된 소방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또한 안 제7조는,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지급 될 수 있도록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1]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 대한 개정안 비교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	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소 방청장----- ---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7조(수당 등) -----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.